

동작구의회공고 제2024-1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로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공사 시행자에게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초등학교등 주 출입문 및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차 금지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대상구역을 어린이 통학로로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6조)

마.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 함 (안 제7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를 구체화 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도로교통법」** **제12조**”로, “**13세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5호) 중 “**“통학로”란 교육시설**”을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등**”으로, “**교육시설까지**”를 “**초등학교등까지**”로,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을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으로 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법」 제17조**”를 “**「교통안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보호구역안**”을 각각 “**통학로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호구**

역”을 “통학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노상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학로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초등학교등의 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3.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 현장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를 “구청장은 규칙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등의 주(主)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초등학교등”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p>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p> <p>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p> <p>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p> <p>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 「도로교통법」 제12조----- ----- -----13세 미만----- -----.</p> <p>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p>

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서 규정한 초등학교등--- 초
등학교등까지 -----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
「교통안전법」 제17조 -----

-----.

1. ----- 통학로의 -----

2. ----- 통학로-----
3. ----- 통학로 내-----

4. ----- 통학로 내-----

5. ----- 통학로-----

6.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
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
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
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
다.

<신 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

설 설치·관리 등) ① 구청장
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6. -----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

7. ---- 통학로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8. ----- 통학로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① ----- 통학로 ----

----- 제4조에 따른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초등학교등의 장과 학부모
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
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

업) -----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신 설>

3. (생략)

4. (생략)

<신 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

1.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

--

3.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 현장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 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규칙 제9조-----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 동작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 (생 략)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등의 주(主)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초등학교등 -----

-----.

제11조(재정지원) ----- 제10조

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6. 12.>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관계 법령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15., 2014. 7. 16., 2016. 5. 2., 2020. 3. 25., 2022. 4. 20., 2023. 7. 4., 2023. 10. 19.>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바.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마.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관계 법령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6.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을 말한다.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

관계 법령

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②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법령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1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계 법령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토교통부장관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로법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1. 1. 5.>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적치장

관계 법령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47호, 2023. 11. 7., 일부개정]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